

대학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7. 08. 12
제5차 개정 2019. 08.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연구·계획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정관, 학칙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건의한다.

1. 대학입학(신. 편입학)전형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신. 편입학)전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신. 편입학)전형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사항
4. 대학입학(신. 편입학)전형 결과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3.31., 2019.08.30)

② 위원은 각 단과대학별로 1명(단, 예술체육대학은 2명)을 입학홍보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학술정보원장, 입학홍보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19.06.25)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3.31)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08.3.3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제6조(간사) 이 위원회는 입학홍보처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1인씩 둔다. (개정 2008.3.31)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38호, 2008.4.1)

이 규정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11호, 2016.4.26)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43, 2019.08.30)

이 규정은 2019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